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정 부 표 창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26.7.1.)으로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을 통합특별시장의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정부 표창의 추천권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표창 추천권자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제6조 중 “따라 서울특별시장”을 “따른 서울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 예정
- 3) 규제심사 등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따라 서울특별시장”을 “따른 서울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표창의 추천은 「상훈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 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행정특 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u>따라 서울특별시시장</u> (이하 “표창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 ----- ----- ----- ----- <u>따른 서울특별시시장 및 「전남광 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 법」 제4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 합특별시장</u>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	
연 락 처	(02) 2100 - 4092